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26. 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복지정책과]

# 제안 설명서

설 명 자: 복지정책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,

-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사망지원금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여 실질적인 예우 수준으로 제고하고
- 조례 전반을 관련 상위 법령과 정합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훈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□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4조제2호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예우 수준을 강화하였고,
- 먼저, 안제1조 및 제2조를 관련 상위 법령의 규정 체계에 맞추어 조례의 정의 및 개별 법령의 각 호를 나열하던 방식을 해당 법령의 조문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향후 상위 법령 개정 시에도 조례 개정 없이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제2항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탄력성 있는 운영으로 개정하였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5. 12. 11.부터 2025. 12. 31.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6. 1. 14.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참전유공자 수당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, 조례를 관련 법령과 정합성 있게 정비하는 등 보훈정책의 신뢰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오니,
-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6007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1. 21.  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  
(복지정책과장)

## 1. 제안(개정)이유

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·예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증액 관련 조문 및 관련 법령과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법령 조문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명시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사망위로금 지급을 20만원으로 증액함(안 제4조제2호)
- 다.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사망일로부터 1년 내로 연장함(안 제5조제2항)

## 3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## 5. 비용추계서: 비대상

## 6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나.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다. 행정규제 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마. 입법예고(2025. 12. 11.~12. 31.) 결과: 의견 없음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6·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”을 “참전유공자를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참전유공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
3. 삭제
4. 삭제
5. 삭제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달서구”를 “대구광역시달서구”로, “주민등록을 두고”를 “주민등록이 되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국가보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이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10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6개월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장제”를 “장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사망자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6·25전쟁과 월남전쟁에 <u>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 ----- <u>참전 유공자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<u>참전유공자</u>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)된 군인</u></li> <li>2. 「<u>병역법</u>」 또는 「<u>군인사법</u>」에 따른 <u>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</u></li> <li>3. <u>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</u></li> <li>4. <u>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</u></li> <li>5. <u>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</u></li> </ol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<u>참전유공자</u>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<u>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</u></li> <li>2. 「<u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<u>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</u></li> <li>3. <u>삭제</u></li> <li>4. <u>삭제</u></li> <li>5. <u>삭제</u></li> </ol>
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지원대상자는 참전  
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  
재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 
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  
다. 다만,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  
훈처장이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  
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지  
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  
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에  
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 
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삭 제
2. 사망위로금 10만원 지급
3. (생 략)

제5조(지급신청) ① 삭 제

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  
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  
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  
급 신청서를 참전유공자의 주민 등록을  
둔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-----

-----

--대구광역시달서구-----

---주민등록이 되어-----

-----국가보

훈부장관이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

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-----

-----.

제4조(지원사업)-----

-----

-----

-----.

2. 사망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던  
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20만원  
지급

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지급신청)

② -----

-----1년-----

-----

-----

-----.

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를 준용한다. 다만,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③ 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장제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## 【관 계 법 령】

### 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6·25전쟁”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.
2. “참전유공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  - 가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  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  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 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  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### 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순국선열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
2. 애국지사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
3. 전몰군경(戰歿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는

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
4. **전상군경(戰傷軍警)**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“상이등급”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5. **순직군경(殉職軍警)**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6. **공상군경(公傷軍警)**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7. **무공수훈자(武功受勳者)**: 무공훈장(武功勳章)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
8 ~ 18(생략)

## □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참전유공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